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청약사에는 보험계약을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서에 보험 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일 당일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계약한 일일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계약한 일일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일일 경우에는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예치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보험금을 드리지 않으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인신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피보험자의 위험성(업종 또는 운전차량 종류 및 용도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의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의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신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모집충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내용의 설명 등을 할 여행하는지 확인 하십시오.** 청약을 할 때 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등을 듣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상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됩니다.** 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중인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 **예치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에까지 지급되는 예치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적용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 1개월간 확정 적용됩니다. (최저보증: 5년이상 연복리 1.25%, 10년이상 연복리 1.0%, 10년초과 연복리 0.75%) 이 보험의 주계약 보장부분에 적용한 이율은 연복리 2.5%입니다.
- **세제 혜택**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예치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예치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퇴직 보험 제외)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보험상당 및 분쟁조정안내**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당사보험상당인내: 콜센터 1588-2286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소비자 보호팀으로 1차 신청하시고 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드립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전화: 국번없이 1332 서울본원: 02)3145-5114 부산지부: 051)606-1702 대구지부: 053)760-4000 광주지부: 062)606-1600 대전지부: 042)479-5151~4 춘천출장소: 033)250-2800 전주출장소: 063) 250-5000 제주출장소: 064) 746-4200 충주출장소: 043-857-9104 강릉출장소: 033-642-1902 [생명보험협회] 본사(대표전화): 02)2622-6600 수도권지역본부: 02)2262-6570 원주지부: 033)761-9672~3 대구지부: 053)427-8051, 421-1621, 427-2276 중부지역본부: 042)242-7002~4 호남지역본부: 062)350-0111~4 영남지역본부: 051) 638-7801~4 [한국생명보험회] 02)2002-7880, 7464
- **보험계약 체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신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heungkuklife.co.kr (당사홈페이지)
 - 보험상품비교-공시 : www.kfia.or.kr (생명보험협회)

방카슈랑스 부조리 신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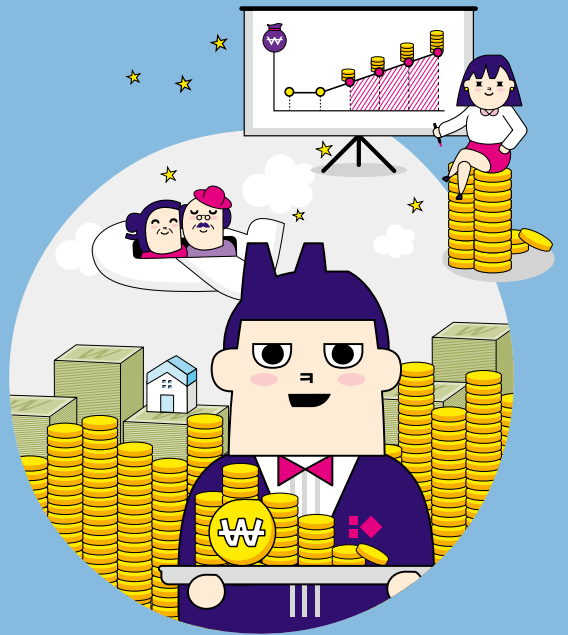
금융기관보장대리점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출과 연계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도록 한 후 새로운 계약의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Tel : 국번없이 1332, 홈페이지 : www.fss.or.kr)

보험사

Heungkuk
흥국생명

무배당 흥국생명

드림저축보험 1904



주요상품특징

사망보장

자금활용

노후연금

Heungkuk
흥국생명

- 흥국생명 고객연속 콜센터 1588-2286
- 직원전화 1644-5611
- 흥국생명 방카슈랑스 02-2002-7880, 7464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03184 서울시 종로구 세문안로 68(신문로1가)
02-2002-7000 www.heungkuklife.co.kr

상품특징

1. 시중 실세금리를 적용하여 자산운용에 안정성 확보

- 시중금리 반영한 공시이율 적용(월 변동이율)
- 5년 이내 1.25% 10년 이내 1.0% 10년 초과 0.75%

2. 법인계약 피보험자 변경 가능

- 보험기간 중 법인계약에 한하여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 퇴직시 피보험자 변경 가능
- ※ 피보험자의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보험료 할인/적립금가산 선택가능

(월납계약에 한함, 추가납입보험료 제외)

- 2년납 - 100만원 이상 : 100만원 초과액의 0.2%
- 3년납 이상
 - 50만원 이상 : 50만원 초과액의 2.0%
 - 100만원 이상 : 기본보험료의 1.0%+100만원 초과액의 0.4%
 - 500만원 이상 : 기본보험료의 1.32%

4. 장기유지보너스(거치형에 한함)

- 5년 경과시점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0.5%
- 10년시점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2%
- *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일시납기본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음

5. 추가납입 사업비

구분	사업비
적립형	1종(단기형) 추가납입보험료의 Min(1.0%, 50만원)
	2종(수익형) 추가납입보험료의 1.5%
거치형	추가납입보험료의 0.5%

* 중도인출금액 부분에 대한 추가납입에 대해서는 기타비용 0.5%만 부가 (최대 3만원)

6. 가입시 경험생명표 적용

- 고객니즈에 따라 연금(변액연금)보험으로 전환가능
- 연금전환시 가입시점의 약관 및 보험요율 적용

7. 비과세 혜택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
-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
-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비과세종합저축 해당 상품

- 납입보험료 5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추가납입·중도인출·선납기능

추가납입

- 보험기간 중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 총 납입한도 :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

<납입가능 추가납입보험료>

- 적립형 : [(기본보험료 x 가입후 경과월수)+선납보험료] x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거치형 : 기본보험료 x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 보험료의 합계
 - (다만, 가입후 경과월수는 가입시를 1개월로 하며 ‘납입유예기간’은 ‘가입후 경과월수’에서 제외함)
 - * 중도인출금액 부분에 대한 추가납입에 대해서는 기타비용만 부과 (최대한도 3만원)

중도인출

- 1회당 한도는 인출 당시의 해지환급금의 70% 이내로 연간 12회까지 가능 (인출수수료 無)
- 인출 후 해지환급금은 아래 금액 이상이어야 함
- * 적립형 : 1구좌당 200만원과 인출시점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30% 중 작은금액
- 거치형 : 일시납보험료의 20% 이상
- ※ 중도인출시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이 감소할 수 있으며, 장래에 해지환급금에서 부가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선납

- 월납계약에 한하여 당월분 포함 12개월까지 선납 가능
-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공시이율로 적립

연금전환·변액연금전환

연금전환

- 보험료 납입기간 완료 후 전환가능(다만, 5년납이상인 경우 5년이후)
- 연금개시나이는 피보험자의 나이가 45세~85세이어야 합니다
- 연금전환시에는 가입시의 약관 및 경험생명표를 적용합니다

변액연금전환

- 전환조건은 연금전환과 동일
- 전환시점의 해지환급금을 일시납보험료로 변액연금으로 전환 (전환금액은 연금개시시점에 보장)
- 전환후 연금개시 시점까지는 최소 10년이 지나야 합니다

가입안내

보험기간·납입기간

적립형(단기형)

보험기간	납입기간
3년, 5년 만기	2년납

적립형(수익형)

보험기간	납입기간
5년, 7년, 10년, 12년, 15년, 20년만기	3년, 5년, 7년, 10년, 12년, 15년, 20년

거치형

보험기간	납입기간
5년, 7년, 10년, 12년, 15년, 20년만기	일시납

보험종류

적립형[수익형, 수익형(생활자금), 단기형, 거치형]

가입나이

10년만기 이하

- 남자 : 만 15세 ~ 75세

- 여자 : 만 15세 ~ 80세

15년, 20년만기 : 만 15세 ~ 최대 75세(적립형, 거치형)

보험료 납입한도

월납 계약 : 매월 10만원 이상(1구좌 : 10만원 ~ 100만원)

2년납은 50만원이상부터, 3년납은 30만원 이상부터 가입 가능

일시납 계약 : 일시납보험료 300만원이상 ~ 200억원

월납 계약 (목돈만들기)

기준 : 여자40세, 수익형(단기형), 적립금 가산형, 공시이율 연복리 2.72%(2019년 3월 현재, 단위 : 만원)

월납입액	2년납 3년만기		5년납 10년만기		10년납 10년만기	
	만기금액	환급율	만기금액	환급율	만기금액	환급율
150만원	3,721	103.4%	10,625	118.1%	19,938	110.8%
100만원	2,480	103.4%	7,078	118.0%	13,273	110.6%
50만원	1,238	103.2%	3,496	116.5%	6,568	109.5%
30만원	최소보험료 50만원부터 가입가능		2,092	116.2%	3,941	109.5%
10만원			689	114.8%	1,314	10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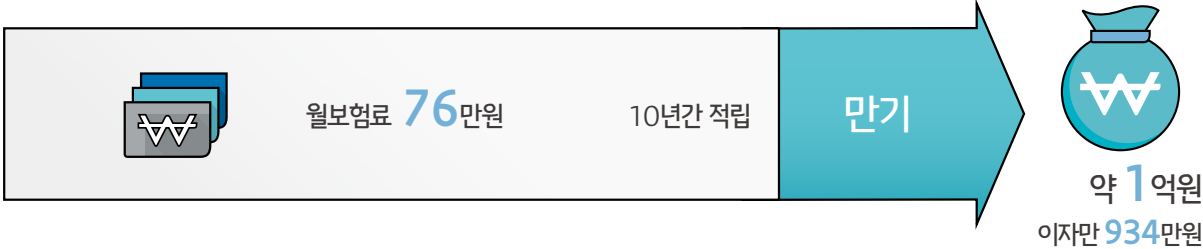
* 본 자료는 공시이율에 따라 매월 변동되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예시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다양한 플랜

저축플랜 (1억만들기)



[기준 : 여자 40세, 10년납 10년만기, 수익형, 월보험료 76만원, 가산형
공시이율 연복리 2.72%(2019년 3월 기준)]

※ 향후 공시이율 변동시 또는 보험료 납입일이 보험계약일과
상이할 경우 중도인출이나 추가납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활자금활용플랜



[기준 : 여자 40세, 3년납 10년만기, 수익형, 월보험료 200만원, 가산형
공시이율 연복리 2.72%(2019년 3월 기준)]

※ 상기에시는 공시이율 연복리 2.72%가 지속된다는 가정하
에서 산출된 금액으로 공시이율 변동시 또는 중도인출이나
추가납입이 발생한 경우 생활자금액이나 만기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생활자금인출

- 계약자는 계약성립 이후 생활자금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활자금 신청시 최초 도래하는 월계약 해당일을 최초 생활자금 인출시점으로 하며 매월 계약해당일(만기시점 제외)에 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3개월단위, 6개월단위, 연단위로 수령할 수 있으며 최초 생활자금 인출시점부터 매3개월, 매6개월, 매년 계약해당일에 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 생활자금인출 후 중도인출시 생활자금인출은 자동 중지되며, 중도인출 후 생활자금인출은 재신청 가능합니다.
- 생활자금은 향후 공시이율 변동시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미수령한 생활자금은 만기시까지 공시이율로 적립하며, 만기시에 만기급여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유연한 보험료 납입

어려워도 해지하지 마세요!

거치형 연금전환



(연금전환 조건 충족시 신청가능)

보험료 납입유예



납입기간의 50%이상 경과후 신청
(최대 36개월 가능)

만기



보험료 납입유예

- 납입기간의 50%이상 지난 계약(다만, 10년납 이상의 경우 5년 이상 경과)
- 최대 36개월 유예가능(월단위 신청 가능)
- 유예기간만큼 납입기간 연장

보험료 납입기간 변경

- 변경 전후 납입기간이 12년이상인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① 이자소득세 비과세

- 해지환급금 및 만기보험금(배당금 포함)에 대하여 이자소득 비과세
(다만,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미적용)

② 계약자 및 수익자의 범위

- 계약자, 수익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③ 가입한도

- 1인당 납입보험료 5천만원(추가납입보험료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을 포함합니다.)

④ 기타사항

- 가입당시 비과세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법규 위반사항 발생시 비과세종합저축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보장내용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단기형, 수익형(생활자금)			가치형
		2, 3년납	5년납	7년납이상	
만기 급여금	보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적립액			
사망 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기본 보험료의 200% + 사망당시의 적립액	기본 보험료의 300% + 사망당시의 적립액	기본 보험료의 520% + 사망당시의 적립액	기본 보험료의 10% + 사망당시의 적립액
생활 자금	생활자금개시 이후 매월 계약해당일에 생존시	생활자금 지급			

주) 「적립액」이란 이 계약의 적립계약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계약의 순보험료 및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점의 적립액에서 중도인출금을 차감하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의 보장계약 순보험료 및 납입후 계약관리비용은 매월 계약해당일에 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 생활자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자금인출시점의 적립액에서 “충납보험료”에 대한 생활자금인출시점 기준 현재까지 금액(장래 위험보험료 및 부가보험료의 현재까지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잔여지급횟수로 분할계산한 금액입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인한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직전 1년간 적용이율 변동현황

기준년월	2018. 3월	2018. 4월	2018. 5월	2018. 6월	2018. 7월	2018. 8월
적용이율	2.74%	2.74%	2.74%	2.74%	2.77%	2.79%
기준년월	2018. 9월	2018. 10월	2018. 11월	2018. 12월	2019. 1월	2019. 2월
적용이율	2.79%	2.76%	2.74%	2.71%	2.72%	2.72%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 1개월간 확정 적용됩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월납 계약

[기준: 여자 40세, 5년납 10만기, 수익형, 가산형, 월납보험료 100만원(단위:천원, %)]

경과 기간	실납입 보험료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5년 이내 1.25%, 10년 이내 1.0%, 10년 초과 0.75%)		연복리 2.50% (Min(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		연복리 2.72% (공시이율)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3년	5년	7년	10년	
1년	12,000	11,327	94.4%	11,405	95.0%	11,418	95.2%
3년	36,000	35,239	97.9%	35,921	99.8%	36,042	100.1%
5년	60,000	59,748	99.6%	61,670	102.8%	62,014	103.4%
7년	60,000	60,896	101.5%	64,738	107.9%	65,380	109.0%
10년	60,000	62,660	104.4%	69,633	116.1%	70,778	118.0%

일시납 계약

[기준: 여자, 40세, 일시납, 10년만기, 일시납보험료 1억원 (단위:천원, %)]

경과 기간	실납입 보험료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5년 이내 1.25%, 10년 이내 1.0%, 10년 초과 0.75%)		연복리 2.50% (Min(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		연복리 2.72% (공시이율)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3년	5년	7년	10년	
1년	100,000	98,291	98.3%	99,507	99.5%	99,721	99.7%
3년	100,000	99,779	99.8%	103,547	103.5%	104,220	104.2%
5년	100,000	101,803	101.8%	108,290	108.3%	109,465	109.5%
7년	100,000	102,863	102.9%	112,772	112.8%	114,498	114.5%
10년	100,000	105,691	105.7%	121,119	121.1%	123,769	123.8%

* 상기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2019년)평균공시이율(2.50%)과 가입시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가입시 공시이율(2019년 3월 기준 연복리 2.72%)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공시이율 변동 시 해지환급금도 변경됩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실제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이나 계약해당일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또는 추가납입이나 중도 인출이 있는 경우 실제 수령액은 표시된 금액과 차이가 있으며, 향후 공시이율이 상승하면 수령액은 증가하고 공시이율이 하락하면 수령액은 감소합니다.

* 최저보증이율은 5년 이내 1.25%, 10년 이내 1.0% 10년 초과 0.75%입니다.

* 상기 예시 수익률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 보험상품은 은행의 예금, 적금 등과 다른 상품입니다.

* 만기시점의 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 및 생활자금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인출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인출전후의 적립액 비율을 반영한 금액과 해당인출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 합계금액으로 특약보험료는 제외) + 1,000원”을 최저보증 합니다.

* 상기 예시된 일시납계약의 해지환급금은 장기유지보너스가 가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세전 기준입니다.